

육아정책 소식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제공하고자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을 지난 1월 27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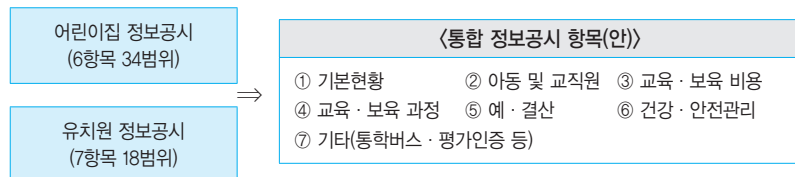
[그림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추진방향

본 대책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처벌강화는 현행 생명을 해치거나 3회 이상 위반 시 폐쇄하던 것에서 중대한 학대 행위의 경우 1회만으로도 폐쇄 조치가 가능하며, 아동학대 시 10년 운영금지를 받던 것에서 영구 제명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 중심의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교사와 관련해서는 자질 강화 측면에서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국가시험 도입과 인성검사 시행, 학과제 도입 등 양성과정 개편과 교육 및 원장 자격 취득 요건, 보수교육, 채용단계 검증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는 근본적 문제해결 측면에서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부담임제 도입과 대체교사 확대,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본 대책안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며, 일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보통합 1단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의 단계적 추진계획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이루어진 정보공시 연계 후속 단계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1)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하고(그림 2 참조) 2)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며 3) 정보공시 횟수 축소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림 2] 통합 정보공시 항목(안)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대기 신청 개소 수를 제한하고, 어린이집 입소 후 중복으로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은 입소 대기 신청 시 개소수를 제한하지 않아 실제 이용을 원하는 아동 수에 비해 많은 수의 대기신청이 이루어져 입소 가능 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여러 어린이집을 대기 신청한 후 한 어린이집에 입소하더라도 기존의 대기신청이 그대로 남아있음에 따라 대기순번이 낮은 아동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최대 3개소로 제한되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별도의 연장신청이 없다면 7일 이후 다른 어린이집에 신청한 입소대기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단, 7일 이내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 대기신청이 그대로 유지되며, 자동 취소된 신청도 필요에 따라 추후 복구 가능하다.